

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광명시의회 김기춘 의원 등이 추진 중인 「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」 외 1건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제1항 및 「광명시의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. 10. 2.

광명시의회의장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: 조례안 참조

2. 제정 조례안 : 덧 붙 임

3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15년 10월 7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 · 우편 · 인터넷 · 팩스

■ 보내는 곳 :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(우 14234)

■ 전화번호 : 02) 2680-2525, 팩스번호 : 02) 2680-2637

■ 전자우편 : chaos96@korea.kr

다. 기재내용 : 성명(단체명) · 주소 · 전화번호 · 의견

라. 제출기관 : 광명시의회사무국(의사팀)

마. 문의전화 : 02) 2680-2525

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
2015. 10. 8.(목) ~ 10. 15.(목)

附 議 案 件

총 2건

-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
- KTX광명역 교통·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
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

光 明 市 議 會

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서 광명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의 확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) ① 시장은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행정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7조에 따라 광명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광명시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)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제반사항은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취 서

관 계 법 령	내 용
교통안전법	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·교육·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. 제7조(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) ①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2.29.> ② 선박에 승선하여 항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(「도선법」에 의한 도선사를 포함하며, 이하 "선박승무원등"이라 한다)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, 기상조건·해상조건·항로표지 및 사고의 통보 등을 확인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. ③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운항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(이하 "항공승무원등"이라 한다)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항공기의 운항전 확인 및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등을 행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.

관 계 법 령	내 용
자동차관리법	제67조(사업자단체의 설립)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(이하 "조합등"이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> 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. 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(發起)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.17.>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1.5.24., 2013.3.23.> 1. 삭제 <2011.5.24.> 2. 삭제 <2011.5.24.> 3. 삭제 <2011.5.24.> 4.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5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 사항의 처리 6.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·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.>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KTX광명역 교통·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하여 KTX광명역을 통일한국의 교통·물류 거점역으로 유치하고자 KTX광명역 교통·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세계 중심역으로서의 거점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KTX광명역 교통·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(이하 “대책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KTX광명역을 교통·물류 거점 육성 및 출발역 지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
2. KTX광명역을 교통·물류 거점 육성 및 출발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, 공청회, 결의대회 개최 및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
3. KTX광명역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망 확충 및 광명시 전역의 철도 연계망 사업 지원

제3조(구성) ① 대책위원회는 상임대표를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광명시가 선거구인 경기도의회의원, 광명시의회의원
2. 광명시에서 활동 중인 단체의 장 또는 그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
3. 광명시 미래 발전을 위하여 교통(철도 포함) 및 물류,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전문가

② 상임대표는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위원 중 대책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제4조(사무국) ① 대책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 및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, 사무국의 역할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.

③ 사무국장추천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광명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임기) ①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상임대표의 직무) ① 상임대표는 대책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상임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대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집행위원회) 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.

② 집행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은 상임대표가 지명하고,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 중 호선한다.

③ 집행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수행한다.

제9조(대책위원회의 사무처리)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대책위원회 및 집행위원회(이하 “위원회등”이라 한다)에서 결정된 사항
2. 위원회등에 부의되는 안건 및 회의 준비 등에 관한 사항
3. 위원회등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·연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0조(운영비 등의 지원) ① 시장은 대책위원회가 하는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대책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조사·연구의뢰) 대책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광명시 재무회계 규칙」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,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 대책 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